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7-1호 2003년 7월 30일(수)

## 제목1: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간담회 개최

-도축수수료 현실화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시 : 2003년 8월 06일(수요일 오후2시)
- 2, 장소 : 축산물 등급판정소 본소내 협회사무실-3층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 3, 목적 : ①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보고-권박사님  
② 이후 조치에 대한 논의
- 4, 대상 : 전 회원사
- 5, 알림 : 회원사의 협조로 축산물등급판정소 신축사옥 3층에 7월 25일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협회지도 정상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제목2: 도축장 구조조정 시급

전국 소·돼지·닭 도축장의 평균 가동률이 낮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23일 밝힌 전국 16개 시·도별 도축장 가동률(2002년 12월 기준)은 소 도축장 24.8%, 돼지 도축장 53.3%, 닭 도축장 54.7%로 나타났다. 특히 소 도축장의 경우 서울(86.6%)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도축장이 40%를 밑도는 가동률을 보였고, 심지어 일부 도축장은 10% 미만의 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돼지·닭 도축장의 경우도 가동률이 40%에 못미치는 곳이 많아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대부분의 도축장이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져 시설투자 부족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 7월1일부터 모든 도축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토록 의무화했지만 현재 162개 소·돼지·닭 도축장의 절반 수준인 84곳만이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됐다는 데서 드러난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월 말 현재 축산물 위생감시 결과 도축·가공업 분야에서 242건의 규정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에 있는 도축장의 절반만으로도 전체 도축물량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도축물량 가운데 HACCP 지정도축장에서 소 67%, 돼지 84%, 닭 81%를 처리했다는 도축실적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도축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일선 지자체는 도축세 등 지방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축장의 영업 및 위생상태 등에 제재를 가하는데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형근 수과원 축산물안전과장은 “적정한 수 이상의 도축장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 작업장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HACCP 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도축장에는 지원책을, 어길 때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농민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 제목3: 소 부산물 판매가격 하향 조정

-서울 축산물공판장내의 소의 부산물 판매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서울 축산물공판장(장장 박치봉)은 지난 16일 구내식당에서 양축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 부산물 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물 판매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하절기 부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값싼 수입품의 급증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제고 누적으로 인한 판매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부산물 판매가격 내역은 한우 10%(암, 수, 거세), 육우의 경우 암 14%, 수 13%, 거세 12% 하향 조정됐다. 우족의 경우 한우는 5%, 육우는 25% 하향 조정됐다. 또한 내장은 한우 암 8%, 거세 7%, 육우 암 10%, 거세 4% 하향 조정됐다.

부산물 도축기준은 우두의 경우 지육중량 4등급(301~350kg)기준이며 내장·우족은 생체 500kg 수소를 기준으로 한다.

공판장측은 "지난 3월부터 상인들이 가격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며 "양축농가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다른 도매시장보다 인하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향 조정된 판매가격은 오는 28일 도축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발췌: 농수축산신문

## 제목4: HACCP 미이행 도축장 행정처분+원료육 납품 불가

-농림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도축장은 행정처분은 물론 HACCP적용 식육가공장에 원료육도 납품하기 어렵게 됐다.

농림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종전 HACCP를 적용하는 식육가공장에 대해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 포장육에 대해서만 HACCP적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토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HACCP적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도에 적발된 도축장은 행정처분은 물론 이 기간동안은 HACCP적용 식육가공장에는 원료육을 납품할 수 없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벌금으로 대치한다해도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은 HACCP 적용을 통해 생산된 식육이 아니기 때문에 HACCP적용을 하고 있는 식육가공장은 원료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육가공장의 HACCP적용은 의무화돼 있는 도축장 HACCP적용과 달리 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월 30일 현재 HACCP적용 식육가공장은 41개소이고 도축장은 오리를 포함 84개소이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HACCP적용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규정도 신설했다.

대장균은 HACCP적용 도축장의 영업자가, 살모넬라균은 시·도지사가 소속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검사주기는 소 300 도체, 돼지 1000도체 및 닭 2만2000도체마다 각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되 한주 도축마리수가 이에 미달하는 도축장은 최소한 한주에 축종별로 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토록 했다.

또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기록을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고시 내용은 고시한날부터 바로 시행되나 미생물검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발췌: 농수축산신문

HACCP 실태조사 착수		
글쓴이 : 양돈협회	날 짜 : 2003-07-15	조 회 : 473
<p>농림부가 올 7월 1일부터 전국 162개 모든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치 않은 사업장에 대해 HACCP 운영 여부 실태조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p> <p>이번 실태조사지침은 전국 HACCP 의무적용 162개 도축장 가운데 아직 지정을 받지 않은 79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시·도에 제공, HACCP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 <p>주요 실태조사항목은 △도축장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지 여부 △도축업자가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을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도축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p> <p>이러한 기준 미 작성이나 미 운용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관련 기준의 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p> <p>특히 올 7월 1일까지 검역원으로부터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지 못한 사업장 가운데 검역원에 HACCP 적용사업장 지정신청중인 도축장은 HACCP 운영이 미흡할 경우 경고 조치한다. 반면 검역원에 HACCP 적용사업장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도축장 가운데 동 기준 미작성 도축장은 1개월 영업정지 조치하고 기준은 있으나 이를 운영치 않은 도축장은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p> <p>또한 최근 1년 이내에 3차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주기를 감안하고 4차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 지침을 확정했다.</p> <p>이와관련 김용상 농림부 축산위생과 담당자는 “이번 지침마련은 올 7월 이후 HACCP 미 시행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행정처분기관인 시·도와 적용대상 도축장의 영업자 모두가 올 7월 이후 행정처분에 관심이 높고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일된 지침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p> <p>[자료:한국농어민신문 2003/7/14]</p>		